

1. 상호 : (주)제이알제2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
2. 대표이사 : 박제혁
3. 본점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, 비동 21층
4. 설립목적 : 부동산의 취득·관리·개량 및 처분 등
5. 변경인가사항 : 종류주 투자자의 원금상환(유상감자) 등을 위한 자금 추가 차입, 자산관리계약 변경
6. 변경인가일 : 2021년 1월 19일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1-89호

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

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월 27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상호 : (주)에이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
2. 대표이사 : 김종국
3. 본점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, 9층
4. 설립목적 : 부동산의 취득·관리·개량 및 처분 등
5. 변경인가사항 : 자산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등
* (추가 자산) 대구 동인동2가 12번지 일원에 주상복합 시설을 개발 후 분양하는 사업
6. 변경인가일 : 2021년 1월 19일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1-110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1월 27일

국토교통부장관

건설신기술 지정 신청

1. 기술개발자
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 (주)탱크마스타(심재황) ② (주)창우텍(양우석)
③ (주)범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(최창희)
나. 전화번호 : ① 02-432-9599 ② 031-253-3838 ③ 02-3469-7521
2. 명칭 : PE sheet를 시트 처짐 거동에 대응 가능한 구조물 손상방지형 슬라이딩 고정구와 슬라이딩 와셔로 고정시킨 수처리 시설물 방수·방식공법 (Master system)

3. 내용요약

<분야>

토목 / 토목구조물 보수보강(포장 보수제외) / 방식

<기술의 요지>

본 신청기술은 폴리에틸렌 수지계(Polyethylene) 마스타 시트를 마스타 고정구를 이용해 상수도 구조물 벽에 고정시키는 시트계 고정식 방수·방식기술로서 마스타 고정구를 12% 이상의 표면함수율 즉, 습윤환경(습윤바탕면)에서도 견고한 부착력 확보가 가능한 방수방식 접착제인 마스타 접착제를 활용해 접착함에 따라 고정구 고정을 위한 앵커 설치로 발생하는 상수도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고, 앵커 설치부를 통한 지하수의 유입 및 유입수의 수압작용을 방지하여 시트의 들뜸 및 박리현상을 해결함은 물론, 상수도 구조물 내부 음용수 공급에 따라 작용하는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시트의 처짐응력을 흡수 및 분산할 수 있는 슬라이딩이 가능한 마스타 와서 및 마스타 고정구 개발을 통해 시트의 찢김 및 박락 문제를 해결하여 방수·방식 공법 시공 및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수도 구조물의 손상 및 그에 따른 내구성 저하문제와 방수·방식층의 하자 발생문제를 해결하여 장기적으로 방수·방식 안정성능의 확보가 가능한 “Master system”에 관한 것이다.

<범위>

폴리에틸렌 수지계(Polyethylene) 마스타 시트를 마스타 고정구를 이용해 상수도 구조물 내부에 고정시키는 시트계 고정식 방수·방식기술로써 12% 이상의 표면함수 상태에서도 부착력 확보가 가능한 마스타 접착제를 활용해 마스타 고정구를 접착하여 상수도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고, 슬라이딩이 가능한 마스타 와서 및 마스타 고정구의 개발을 통해 시트의 처짐응력을 흡수 및 분산하여 이로 인한 시트의 찢김 및 박락 문제를 해결한 Master system에 관한 것이다.

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350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‘나’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1-111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1년 1월 27일

국토교통부장관

건설신기술 지정 신청